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8-132 호
- 제 출 자 : 안산시장
- 제 출 일 : 2019년 3월 19일
- 회 부 일 : 2019년 3월 19일

2. 제안이유

- 안산어촌민속박물관의 관람환경 유지와 관람객의 만족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안산시민에 한하여 관람료를 면제하여 안산시민에게 문화 복지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산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안산시민에 한하여 관람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변경 (안 제7조 제8호)
- 안산어촌민속박물관의 관람료 무료화 시행에 따른 무분별한 관람객 입장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의 입장 금지 신설(안 제8조 제1항)

4.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5조

(관람료와 이용료) 제2항에 따라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로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안산시민에게만 무료 관람기회를 제공하여 문화복지 혜택을 부여하고 관람인원의 증가로 인한 관람환경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관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 금지를 규정을 준수하여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한 기회라고 판단됨.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8-135호
- 제출자 : 이경애 의원
- 제출일 : 2019년 3월 18일
- 회부일 : 2019년 3월 19일

2. 제안이유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기본원칙과 기본권보장에 따라 안산시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아동친화도시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 및 시행과 조성기준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및 사업을 정함(안 제6조 ~ 제13조)
- 아동친화도시조성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제21조)
- 아동참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2조~ 제29조)

4. 검토의견

가. 제정의 취지

- 본 조례 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기본원칙과 기본권 보장에 따라 우리시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 지난 11월 제252회 임시회의시 우리 위원회에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하면서 아동친화도시 진행사항 등을 언급한바 있었고 원안 동의하였음.

나. 조문별 주요 제정사항

- 제1장 총칙은 제1조(목적)에서 제3조(시장의 책무)로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은 제4조(조성계획의 수립·시행)과 제5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로 구성되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제3장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및 사업은 조례 제6조(아동의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내지 제13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으로 구성되어 아동을 위한 사업 및 아동의 건강증진, 문화생활, 아동의 참여보장 및 아동의 권리에 대한 홍보 및 교육과 사업수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제4장(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과 제5장(아동친화도시추진 아동참여위원회)에서는 “위원회”와 “아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임기, 회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제6장은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종합검토의견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대해 설명 드리면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으로써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한국은 1991년도 가입하고 세계 193개국이 비준한바 있음. 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의사표시권, 고문 및 형벌금지, 불법해외이송 및 성적 학대금지 등 각종 「아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가입국은 이를 위해 최대한의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협약이 정한 의무에 따라 가입국 정부는 가입 뒤 2년 안에, 이후 5년마다 어린이 인권 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그 국가보고서를 심의해 어린이인권 보장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해당국 정부와 함께 모색하고 있음.

○ 「아동복지법」 제3조 및 제4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4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아동이 행복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등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성하고 있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아동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8-141호
- 제 출 자 : 현옥순 의원
- 제 출 일 : 2019년 3월 18일
- 회 부 일 : 2019년 3월 19일

2. 제안이유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보육실 추가와 일시보육서비스를 구체화하였고, 센터운영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신규 시립어린이집의 개원 준비금 지원 등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보육실 설치운영 (안 제13조제2항)
- 일시보육서비스 제공의 구체화 (안 제14조제14호)
- 육아종합센터의 계획에 주민참여 의견청취 (안 제19조의2)
- 신규설치시립어린이집의 준비금지원 근거마련 (안 제 29조제1항)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3조제2항과 제14조제14호의 내용 중 보육실을 추가로 설치

는 하는 사항과 호흡기감염 등의 우려가 있어 등원이 불가능 직장 근로부모의 아동을 보호하는 차원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에 대해 육아로 인한 맞벌이 가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기 위함.

- 안 제19조의2(주민참여)는 운영계획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참여자가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니 이는 주민과 협력하고 의견을 제시 하는 것은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9조제1항9호는 영유아보육법제2장 제10조에 어린이집의 종류를 나열 국공립어린이집과, 가정, 민간 어린이집등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의 신규 위탁개원 시에는 개원준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도 참고하시어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안산시 출산장려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8-123 호
- 제 출 자 : 안산시장
- 제 출 일 : 2019년 3월 12일
- 회 부 일 : 2019년 3월 19일

2. 제안이유

- 출산장려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출생축하금 지원 금액 확대) 출산장려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2019년 출생한 첫째아이와 둘째아이 이상부터 출생축하금 지원 확대(안 제 5 조)

(다만 2019년 출생한 넷째아까지만 개정 전 조례 적용하고 2020. 1월부터 둘째아 이상으로 적용)

현 행	확 대
첫째 아이 50만원 이내	첫째 아이 100만원 이내 둘째아이 이상 300만원 이내
둘째 아이 100만원 이내	
셋째 아이 300만원 이내	
넷째 아이 이상 1,000만원 이내(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	

※ 2019년 2월 통권제268호 보건복지포럼 자료 : 결혼한 여성(15세~49세) 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이상적인 자녀의 수는 2명, 기대 자녀수도 2명, 출생아수 1명(26.4%), 2명(53.3%)로 출산장려금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확대 필요

- **(출생축하금 신청자 확대 규정)** 출생축하금 신청 시 출생아의 부모가 모두 사망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보호자에게도 신청 확대(안 제6조)
- **(지역화폐 지급 근거 마련)**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생축하용품 지역화폐(모바일상품권 포함)지급 근거마련(안 제7조2제2항)
- **(다자녀 교복비 지원 조항 폐지)** 2019년 중·고생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에 의거 다자녀 교복비 중복지원 조항 삭제(안 제14조~제15조)
- **(민간단체 등의 지원 근거 마련)** 출산친화 사업장려 및 건강가정을 만들기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업, 민간단체 등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8조)

※ 2019년 2월 통권제268호 보건복지포럼 자료 : 2018년 전국 출산율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를 보면 계획자녀수는 2명이고,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 및 “있는 것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라고 응답한) 여성은 전체 응답여성의 82.7%로 긍정적인 생각이나 실제 출생아수는 1.75명으로 자녀 출산의 장애요인을 지자체와 민간이 힘을 합쳐 제거하고 긍정적인 인식개선 필요
- **(포상 근거 마련)** 출산친화 및 지역사회 건강가정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단체 포함) 등에 대한 포상근거 마련 (안 제19조)
- **(홍보물품 지급 근거 마련)**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 조성을 위하여 시민에게 각종 홍보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0조)
- **(부칙 다소 수정)** 지원대상자 및 부 또는 모는 소급 신청 시 안산시 주민등록이 계속 되어 있어야 소급 지원함.

4. 검토의견

가. 개정취지

본 조례 개정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양육의 어려움으로 출산을 꺼리는 가정에 대한 다각적 정책이 필요할 것이며 그에 따라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종합검토의견

- 다만 개정 조례안 제5조(축하금 지원금액)제1항2호의 규정을 보면 지원금액의 확대가 아닌 대상자 축소로 보여 지고 있어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안 제7조의2(출생축하용품 지원) 제2항 “안산시가 발행한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는 규정은 현금대신 상품권 지급으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또한,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출생축하금 지원사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참고사항

- 개정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관련사업계획서 : 붙임

4. 검토의견

가. 개정취지

본 조례 개정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양육의 어려움으로 출산을 꺼리는 가정에 대한 다각적 정책이 필요할 것이며 그에 따라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종합검토의견

- 다만 개정 조례안 제5조(축하금 지원금액)제1항2호의 규정을 보면 지원금액의 확대가 아닌 대상자 축소로 보여 지고 있어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안 제7조의2(출생축하용품 지원) 제2항 “안산시가 발행한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는 규정은 현금대신 상품권 지급으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또한,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출생축하금 지원사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8-124호
- 제 출 자 : 안산시장
- 제 출 일 : 2019년 3월 12일
- 회 부 일 : 2019년 3월 19일

2. 제안이유

- 영유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에게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저소득층 아동 중심의 방과 후 돌봄지원 체계를 보완하여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다함께 돌봄 사업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안 제4~제6조)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 돌봄시설 간 협력과 돌봄 증진을 위한 지역돌봄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13조)

4. 검토의견

가. 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현 방과 후 돌봄 교실은 필요아동의 많은 수요에 비해 학교, 지역아동 센터 등 한정된 돌봄 인원과 이용시간대·입소자격요건 등 제한이 많아 돌봄 기능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어 아이를 다함께 돌볼 수 있는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나. 조문별 주요 제정사항

- “돌봄 아동”, “다함께 돌봄”의 정의 (조례안 제2조)

- “돌봄 아동”이란 안산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만6세에서 만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을, “다함께 돌봄 사업”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에 이루어지는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규정

- “다함께돌봄 지원사업”은 (안 제4조)

- 돌봄시설확충 및 지원사업,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사업,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사업 등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

-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 (안 제7조) 안 제8조(비용의 징수)는

- 다함께 돌봄 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 근거 마련과 다함께 돌봄 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실비의 비용 징수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에 따른 비용 감경 및 면제규정을 두었으며,

○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안 제10조)

-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국장으로 규정

○ “위원의 임기” (안 제11조)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도감독” (안 제15조)

-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규정

다. 조문의 검토

○ 본 조례는 본칙 16개의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조문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안되었음.

라. 종합의견

○ 본조례 제정안은 정부의 ” 온종일 돌봄 체계구축 “사업으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시·일시 돌봄 비스를 제공한다는 국정과제 사업으로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구축으로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내 공공, 민간자원의 연계 등을 통한 돌봄 사업의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운영에 맞는 단어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시립초지어린이집, (가칭)시립중앙어린이집, (가칭)시립호수어린이집]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8-109호
- 제 출 자 : 안산시장
- 제 출 일 : 2019년 3월 12일
- 회 부 일 : 2019년 3월 19일

2. 제안이유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일환으로 신축 및 재건축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가칭 :시립초지어린이집, 시립중앙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매입(가칭 : 시립호수어린이집)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맡을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운영자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운영 대상시설

어린이집명	소재지	보육정원	보육교직원	연면적	위탁기간	비고
(가칭)시립초지	단원구 원초로 61(초지동)	30	6	201.24m ²	19.09.01.~ 24.08.31.	무상 임대
(가칭)시립중앙	단원구 고잔로 115(중앙동)	45	10	363.42m ²	19.09.01.~ 24.08.31.	무상 임대
(가칭)시립호수	단원구 광덕서로 19 대림 아파트 132동 101호(호수 동)	20	5	116m ²	19.09.01.~ 24.08.31.	매입

○ 보육아동현황

(2019. 3월 기준)

어린이집명	구분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장애아
(가칭) 시립초지	반수	6	2	2	2				
	정원	30	6	10	14				
(가칭) 시립중앙	반수	7	2	2	2	1			
	정원	45	6	10	14	15			
(가칭) 시립호수	반수	4	1	2	1				
	정원	20	3	10	7				

- 위탁기간 : 5년 이내

※ 「안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23조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만 재위탁 가능(재위탁기간은 3년으로 함.)

위탁대상 모집방법

○ 모집방법 : 영유아보육법 제 24조에 2항에 따라 공개경쟁 방법으로 위탁자 선정

○ 신청자격 기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내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정관의 목적 사업에 사회복지사업,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단, 법인(법인등기)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에 의거 보육사업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개 인】

-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 21조 제①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

※ 신청자가 1명(1개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공고 실시

◆ 신청제외

-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 최근 5년 이내 보육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된 운영체(자)
-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 공고일 현재 안산시 관내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법인, 단체, 개인)
단, 모집대상 시설의 위탁이 시작되는 날 전일까지 현재 운영중인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운영자로 상기 신청자격이 있는 자는 가능
- ▶ 개인 신청자의 경우 1960년 이전 출생자
- ▶ 그 밖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운영체(자)

□ 심사방법

○ 심사결정방법

- 적격성 확인 : 위탁운영신청자의 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
- 선정방법 : 안산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 후 시장이 결정
- 심사기준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보건복지부 2019보육사업안내 지침의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 준용
(※ 필요시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조정가능)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1.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2.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35
3.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10
4. 운영체의 공신력	10
5.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 계	100

- 심사결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70점이상자 중 최다득점을 받은 신청자를 운영자로 선정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까지 계산)

- 동점자 처리 : 순위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1순위 : 어린이집 운영계획
 - 2순위 :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 3순위 :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 결과공개 : 안산시청 홈페이지 결과 공개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2조(위탁운영)

○ 민간위탁의 필요성

-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 복지증진의 역할을 수행함.
- 어린이집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가 운영하여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함.

예산(사업비) 현황 : 2019년 1회 추경 반영

구 분	(가칭)시립중앙어린이집	(가칭)시립초지어린이집	(가칭)시립호수어린이집
사 업 비 (2019년 1회추경)	· 공 사 비 : 90,000천원 · 기자재비 : 45,000천원	· 공 사 비 : 90,000천원 · 기자재비 : 30,000천원	· 매 입 비 : 306,750천원 · 공 사 비 : 90,000천원 · 기자재비 : 30,000천원
	· 총사업비 : 135,000천원 [국60,000, 도30,000, 시45,000]	· 총사업비 : 120,000천원 [국60,000, 도30,000, 시30,000]	· 총사업비 : 426,750천원 [국141,026, 도70,513, 시215,211]

4. 검토사항

- 본 동의안은 2019년 9월 신규 개원예정인 시립어린이집 2개소와 기존 운영 중인 1개소에 대한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운영하기 위해 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개인을 위탁체로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위탁업체 선정 시 보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재정능력의 건실성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최근 자주 발생하는 아동학대 및 영유아사고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8-116호
- 제 출 자 : 안산시장
- 제 출 일 : 2019년 3월 12일
- 회 부 일 : 2019년 3월 19일

2. 제안이유

- 다문화시민대상 수상후보자를 전국에서 안산시로 축소하고, 시상부문을 5개 부문으로 확대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안산시 실정에 맞는 내실 있는 평가가 되도록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적용대상의 범위를 대한민국에서 안산시로 조정함.(안 제1조).
- 시상부문을 확대 조정함.(안 제3조).
- 수상후보자 추천자의 자격의 범위를 축소 조정함.(안 제6조).
- 공적심사 내용을 포괄적으로 조정함.(안 제7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수상후보자 범위를 안산시로 축소하고 시상부분은 확대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자 하며,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외국인 지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8-127
- 제 출 자 : 안산시장
- 제 출 일 : 2019년 3월 12일
- 회 부 일 : 2019년 3월 19일

2. 제안이유

- 시상 인원 조항을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축소되어 있는 수상인원을 확보하여 수상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제1항 개정
 - 부문별 1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인원을 총인원 7명 이내로 개정

4. 검토의견

- 중소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에게 사기 양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어려운 기업환경에서도 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에 헌신 노력하는 중소기업 대표 및 근로자를 발굴하여 포상 격려하는 취지로 수상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규정을 총인원 7명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신청 접수 추가 확보가 가능한 부문에 대하여 우수한 기업의 추천 기회를 제공하고,
- 또한 선정 과정에서 경합으로 인하여 우수한 기업이 탈락하는 문제점을 해

소하는 등 수상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업들의 공로와 노력을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참고사항

- 개정조례안 : 붙임1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9. 2. 1. ~ 2019. 2. 21. (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붙임3), 방침결정문(붙임4)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8-106호
-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출일 : 2019년 3월 12일
- 회부일 : 2019년 3월 19일

2. 제안이유

-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및 확충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적 한계로 산단노후화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 국가산업단지의 당면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재정확충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건의 및 정책제안 등의 공동 추진을 위해 결성된 협의회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정식 지방협의회로 등록하고자 동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 규약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고자 함.
-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 가. 명칭 및 목적
 -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 국가산업단지의 관련법률·제도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조정·의견교환 등
 - 나. 회원의 구성 및 임원의 구성 등 선임방법
 -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한 전국 지방정부 중 총회의 의결을 거친 지방정부
 - 회장 1인, 부회장 1인, 상임위원 1인을 총회 개최 시 선출(임기 1년)
 - 다. 총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와 사무소 운영

- 정기총회(연1회), 임시총회(회장 필요시) 개최
- 실무협의회(반기1회 또는 필요시) 개최
- 협의회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지방정부 담당 부서에 배치

라.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 국가산업단지 조성 유지·관리 등 관련 지방정부 업무전반에 대한 협의
- 국가산업단지 관련 지방정부 상호간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 및 갈등 조정
- 중앙부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건의

마. 협의회 경비의 관리 및 운영

- 협의회 부담금은 모든 회원이 동일하게 연간 500만원 부담
- 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은 회장을 맡고 있는 자치단체의 사무소에서 관리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제1항부터 제3항
- 지방자치법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제1항부터 제3항
- 지방자치법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예산수반사항

- 부담금 연간 500만원
 -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10조

기대효과

- 국가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를 위한 협의회 목적 달성에 유리한 법적지위 획득(현재는 비법적 단체)
- 정식 행정협의회 등록 시 협의회 가입 확대를 통한 중앙정부 소통 창구 단일화 및 역할 증대

4. 검토의견

- 본 규약안은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관련 법률·제도에 대해 연구·조정하고자 결성된 협의회를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를 구성을 고시하고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현재 국가 산업단지 중 일부는 노후화 되어 각종 기반시설 유지관리비가 막대하게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에 우리 시를 비롯한 10개의 시·군의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연대·협력으로 산업단지 관련 법률·제도에 대해 공동연구·조정·의견 교환과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 업무전반에 대한 협의와 상호 현안의 갈등을 조정하며, 협의회 결정사항 등을 중앙부처 및 관계 행정기관에 건의하고,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등을 이끌어내는 등,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하여
- 2018년 3월 29일에 개최된 실무협의회에서 법률이 정한 지방협의회 창립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어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른 정식 지방협의회를 구성·고시하고자 같은 법 제2항에 따른 협의회 규약을 지방의회에 의결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의회 구성이 완료될 경우에 기대효과로는 국가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국가예산 지원의 확대와 중앙정부와의 소통창구 단일화와 가교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됨.